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819
------	-----

2012. 6. .
재정경제위원회

I .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6월 8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6월 12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2012.6.26)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 의결(수정안가결)

II . 제안설명의 요지(경제진흥실장 권혁소)

가. 제안이유

- 지속가능한 재원으로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며,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기업 등에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사회투자기금은 일반회계로부터 출연하고, 융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및 투자회수금 등으로 조성함(안 제3조).
2. 기금은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소셜커뮤니티 및 마을공동체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는 한편, 사회 다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에 사용됨(안 제4조).
3.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 및 위탁에 관한 사무 등을 심의하고 기금의 조성 및 결산보고,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운용 및 관리를 함(안 제6조 부터 제8조까지).
4. 효율적인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9조 및 제10조).
5.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수립·작성된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안 제11조).
6. 사회투자기금의 존속기한을 2016년으로 함(안 제12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노수)

가. 제정안의 개요

- 본 제정안은 사회 양극화 해소 등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사회적 배려기업 등을 지원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사회투자기금’ 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나.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개요

- 서울시(이하 “시”)는 사회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마련과 다양한 사회적 금융에 대한 자금수요 확대에 적극 대응하는 등 공익적 목적의 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을 설치·운용할 계획임.
- 안 제4조에 따르면 사회투자기금은 관할지역내의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활동가,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 투자사업, 장애인·여성·다문화가정·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마을기업 및 마을공동체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 등에 지원할 예정임.
- 이를 위해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3,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500억원은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나머지 1,500억원은 기업과 금융기관 및 시민들의 기부와 협찬 등 민간 모집을 통해 조성할 계획임.
- 특히, 현행 법령상 서울시의 투자·출연기관이 민간으로부터 적극적인 기부금 모집 행위를 할 수 없어 사회투자기금을 운용하는 별도의

비영리법인 혹은 비영리단체를 통해 기금모집과 운용을 맡도록 할 계획임(안 제9조제2항).

다.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논의와 필요성

- 1990년대 유럽의 진보적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시작된 사회투자에 대한 논의는 유럽연합(EU)이 회원국들에게 노동·사회복지·인적자원 개발 정책 등을 장려하면서 그 실체가 구체화되었음.
- 일반적으로 사회투자는 “사회구성원의 노동시장 참여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인적자본과 사회서비스에 대한 사회지출”로 정의되고 있으며¹⁾,
- 최근에 사회투자가 주목받는 것은 기존의 사회복지정책이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영역으로 인식되어온 것과는 달리 사회투자는 경제활동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평생교육, 취업, 고용인프라, 가족서비스에 대한 지출 등 공익을 우선하는 사회적 가치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초함으로써 생산적이며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을 강조하기 때문임.
- 국내에서도 고용없는 성장, 고용과 소득에 있어서의 양극화의 심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변화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직면해 교육과 고용, 복지의 연계를 고려한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음.

1) 한국도시연구소(2007). 「사회투자재단 역할과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이후 시민 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회투자에 대한 연구와 실천적 정책들이 발표되었고, 정부도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방편으로 정부, 기업,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거버넌스 협의체인 ‘사회투자지원재단’을 2007년 11월 출범시킨 바 있음.
- 사회투자지원재단은 현재까지 공익을 위한 시민참여경제모델로서 사회적경제, 상호부조와 윤리투자를 위해 조성되는 사회적기금, 사회투자의 공익적 성과관리를 위한 사회적회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배제에 대응하는 사회투자전략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일정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
- 이처럼 사회투자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당면과제인 빈곤의 극복, 양극화 해소, 미래인적자원 개발 등을 해결하는데 있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의 균형적인 접근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음.
- 다만, 사회투자는 궁극적으로 민관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를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사회구성원이 사회투자 혹은 이를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대를 갖고 있어야 할 것임.
- 그러나, 아쉽게도 현재까지 우리 사회는 사회투자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지 못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투자와 이를 위한 활동이 낭비적이라는 시각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사회투자와 기금 조성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음.

라. 사회투자기금 설치의 적절성

- 기금 운용은 일반회계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단체장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자칫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고, 재정 안정성과 투명성·공익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 제15조에서는 기금이 특별회계 혹은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지금의 통합·폐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시가 운용중인 13개의 기금 가운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한 일부는 새롭게 설치하고자 하는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목적과 일부 중복될 우려가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됨²⁾.
- 법 제2조에 따라 자치단체는 자율과 책임하에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으나, 그 기금의 행정목적이 특정되어야 하며, 뚜렷한 정책적 목표없이 설치되어 자의적으로 운용되어서는 곤란함.
- 그러나, 안 제4조는 사회적기업, 환경 및 문화, 장애인·여성·다문화 가정·북한이탈 주민, 마을기업, 마을공동체는 물론이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에 이르기까지 기금의 지원용도가 매우 다양하고 이질적임.

2) 중소기업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노인, 장애인, 청소년, 자활, 주거복지 계정 등) 등은 그 설치 목적상 사회투자기금의 지원범위와 상당부분 중첩될 우려가 있음.

- 이처럼 사회투자기금의 투자·용자 용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해 법이 엄격히 경계하는 자의적이고 방만한 기금운용이 우려된다는 측면에서 사회투자기금의 용도를 기금 조성의 목적에 맞도록 보다 구체화해야 할 것임.

마. 사회투자기금의 용도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

- 사회투자기금의 지원 대상 중 하나인 ‘사회적기업’에 대해 안 제2조제1호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예비사회적기업과 서울형사회적 기업 등이 사회투자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 사회적기업의 범주를 확장하거나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정의를 준용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사회투자기금과 관련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는 ‘사회투자기금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을 정하고 있는 안 제7조제2항은 제1호의 당연직 위원과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위원회 구성·운영의 안정을 위해 바람직할 것임.

바. 종합의견

- 급변하는 사회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사회통합 필요성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는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양극화 해소 등의 사회적,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의도와 목적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사회 구성원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투자 사업의 속성을 고려할 때, 사회투자기금을 설치·운영할 사회적 여건과 합의가 성숙되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기존에 설치되어 운용중인 각종 기금과의 중복성 문제나 지나치게 다양한 용도지정에 따른 자의적 운용가능성, 지방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 밖에도 시의 예상처럼 1,500억원이라는 민간의 기부나 협찬이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금 조성 계획이 필요하고, 기금을 위탁받아 운용할 경쟁력있는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아울러, 기금의 설치 근거를 명확히 정하기 위해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야 하며, 안 제4조제4호의 ‘소셜커뮤니티’ 등과 같이 개념이 모호한 일부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약어 사용의 혼란 등 법령 체계에 적합하지 않은 일부 조문에 대한 정비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8명, 5명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19
----------	--------

제안년월일 : 2012년 6월 26일
제안자 : 재정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방만한 기금운용과 자의성을 차단해 기금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고, 일부 미흡한 규정을 보완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기금의 지원대상 중 그 의미가 모호한 일부 조항을 삭제함(안 제2조).
- 나. 민간의 공익 기부금을 기금으로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다.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기 타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안 제2조제3호와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제3호로 한다.

안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3. 용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투자회수금 등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안 제4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하고, 제1호와 제2호,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
4. 마을기업, 마을공동체기업

안 제5조제1항 단서 중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을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으로 한다.

안 제6조 본문 중 “사회투자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사회투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제1호부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7조제2항 중 “위촉한다”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하고,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사회적금융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안 제8조제5항 중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제6항 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사회투자기금”을 “기금”으로, 제7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제8항 중 “서울특별시”를 “시”로, “사회투자기금”을 “기금”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로 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사회적 금융”을 “사회적금융”으로 하고,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조에 따라 투자·융자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지원금 상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제10조제1항 중 “반기”를 “분기”로 한다.

안 제12조 본문 중 “사회투자기금”을 “기금”으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원안	수정안
제1조(목적) <생략>	제1조(목적) <원안과 같음>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사회적기업”이란 <u>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u></p> <p>2. <생략></p> <p>3. “사회적활동가”란 <u>사회적가치 증진을 주목적으로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u></p> <p>4. “사회적벤처기업”이란 <u>회사의 재무적 이익 이외에 사회적가치의 증진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벤처기업을 말한다.</u></p> <p>5. <생략></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사회적기업”이란 「<u>사회적기업 육성법</u>」 제2조제1호의 기업으로서 <u>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u></p> <p>2. <원안과 같음></p> <p>3. <삭제></p> <p>4. <삭제></p> <p>3. <안 제5호와 같음></p>
<p>제3조(기금의 조성) <신설></p> <p>①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p>	<p>제3조(기금의 조성) ① <u>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u></p> <p>② 기금의 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p>

<p>1. ~ 3. <생략></p> <p>4.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용된 기금의 회수금</p> <p>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p>	<p>1. ~ 3. <원안과 같음></p> <p>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p> <p>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 라 한다)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 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서울특별시 관할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벤처기업, 사회적활동가</p> <p>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 투자 사업</p> <p>3. <생략></p> <p>4. 소셜커뮤니티, 마을기업, 공동체기업 및 마을공동체</p> <p>5. ~ 6. <생략></p>	<p>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 관할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p> <p>1. 사회적기업,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p> <p>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p> <p>3. <원안과 같음></p> <p>4. 마을기업, 마을공동체기업</p> <p>5. ~ 6. <원안과 같음></p>
<p>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운용관은 산업경제정책관으로 하고 분임기금 운용관은 기금관리 소관 과장으로 하며, 기금 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운용관은 산업경제정책관으로 하고 분임기금 운용관은 기금관리 소관 과장으로 하며, 기금 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p> <p>② <원안과 같음></p>
<p>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사회투자</p>	<p>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사회투자</p>

<p>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p> <p>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p> <p>3.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p> <p>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p> <p>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p> <p>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산업경제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4. 사회적 금융 및 사회적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p> <p>③ <생략></p>	<p>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원안과 같음></p> <p>② 위원장은 산업경제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1. ~ 3. <생략></p> <p>4. 사회적 금융 및 사회적 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p> <p>③ <생략></p>
<p>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생략></p> <p>⑤ 위원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u>사회투자기금</u> 소관부서의 기금 관리·운용 담당사무관으로 한다.</p> <p>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⑧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u>사회투자기금</u>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u>기금운용심의위원회</u>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p>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④ <원안과 같음></p> <p>⑤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p>⑥ <u>심의위원회</u>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u>기금</u> 소관부서의 기금 관리·운용 담당사무관으로 한다.</p> <p>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⑧ 위원 중 <u>심의</u>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u>기금</u>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u>심의위원회</u>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⑨ ~ ⑩ <생략>	⑨ ~ ⑩ <원안과 같음>
<p>제9조(기금의 관리) ① <생략></p> <p>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u>사회적 금융</u>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③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투자·용자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제9조(기금의 관리) ① <원안과 같음></p> <p>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u>사회적 금융</u>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③ 제4조에 따라 투자·용자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지원금 상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④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투자·용자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9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9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1조(결산 및 보고) <생략></p>	<p>제11조(결산 및 보고) <원안과 같음></p>
<p>제12조(존속기한) <u>사회투자기금</u>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12조(존속기한) <u>기금</u>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p>
<p>제13조(시행규칙) <생략></p>	<p>제13조(시행규칙) <원안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 및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2. “사회적가치”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 개념의 효용을 말한다.
3. “사회적금융”이란 사회문제를 개선하고 사회적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한 금융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3. 용자상환금, 차입금, 예수금, 투자회수금 등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시 관할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사회적기업,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

2.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투자 사업

3.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 주민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 및 사람

4. 마을기업, 마을공동체기업

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금 공모사업 등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운용관은 산업경제정책관으로 하고 분임기금 운용관은 기금관리 소관 과장으로 하며, 기금 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 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사회투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기금 결산보고서의 작성
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업경제정책관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제정책과장 및 예산담당관
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 민간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4. 사회적금융 및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 중 심의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전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소관부서의 기금 관리·운용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위원 중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⑨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⑩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의 안정을 해하거나 정책 집행과정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안전에 대해서는 비공개할 수 있다.

제9조(기금의 관리) ① 시장은 기금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사업성과

를 평가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라 투자 및 용자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4조에 따라 투자·용자지원을 받은 자는 그 지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지원금 상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라 투자·용자지원을 받은 자가 소재지, 대표자 등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9조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 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분기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